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82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이광희 · 조계원 · 김문수
이재강 · 김우영 · 민병덕
임미애 · 이재관 · 박홍배
양부남 · 김상욱 · 문금주
이강일 · 김 윤 · 윤건영
박지원 · 이상식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압수를 막아서며 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수사 대상 스
스로가 증거 인멸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
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책임자가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해당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가 해당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 또는 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및 제1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 ② (생 략) <u><신 설></u>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의 책임자가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해당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u>
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 ① · ② (생 략) <u><신 설></u>	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가 해당 압수·수색</u>

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
공서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
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
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
명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
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
로 인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